

인천지방법원 2018. 5. 16 선고 2017가단31714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론 종결 2018. 4. 25

판결 선고 2018. 5. 16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,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를 인도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는 2015. 5. 11.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토지'라 한다)을

낙찰(인천지방법원 c)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다.

나. 이 사건 토지 지상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건물'이라 한 다)에 관하여 2015.

5. 13. D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,같은 날 증여를 원인 으로 한 피고 명의의

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.

다. 원고는 2016. 6.경 피고를 상대로,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부지인 이 사건 토지 를 무단점유하고

있다고 주장하며 지료청구소송(인천지방법원 2016가단28759, 2016머15935)을 제기하였고,이

법원은 2016. 12. 5. "피고는 원고에게 기존 지료인6,400,000원을 분할하여 지급하고, 2016. 11.

13.부터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상실일 또는 피고의 점유종료일까지 매월 350,000원의

지료를 지급하라"는 취지의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으며,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.

라. 그러나 피고는 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도 해당 지료를 지급하 지 않았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, 갑 제1,2호증(가지번호 포함)의각기재,변론

전체의 취지

2.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점유를 정당화할 아무런 법률상 권원이 없고,종전

지료청구소송에서 정한 약정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바,이 사건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의

소유권에 기한 청구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,해당부지인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,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.

판사 박상수

별지